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인사 200-121)

75-7805

1979. 5. 22.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위임전결 규정 개정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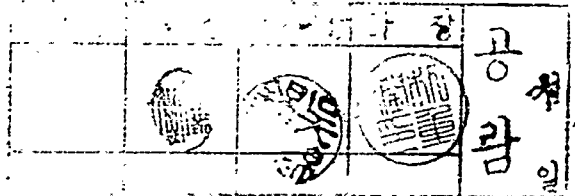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위임전결 규정이 개정 공포 (훈령 제 501호 79.

5. 1) 됨에 따라 이를 철저히 숙기하여 준수토록 할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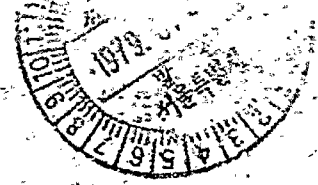
2. 금번 개정된 위임전결 규정은 별도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시보

710호 (79. 5. 1) 에 게재하였으니 이를 수령 받은 부서는 폐쇄되지 않도록

표지를 부쳐 이용토록 할 것. 끝.



서울산업대학		결제
접수	1979. 5. 22.	지 사 장 함
발신	19 시 20 분	
연락처	제 1256 호	
부	19/21	
관		197
인		카



서울특별시 향

수신처: 서사1-3,서관1-4,서극1-15,서과1-76,5담당관,서구1-13,서출1-2;

서사1-78,귀합1-8.

소비는 규모있게 생활은 분에 맞게

120

에너지는 주력이다. 아껴써서 애국하자.

관인생략

문 교 부

총무 200-11152 (70-3419) 1979 6 20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교육공무원증색채취정중개정령 공포




교육공무원증색채취정중개정령을 별첨과 같이 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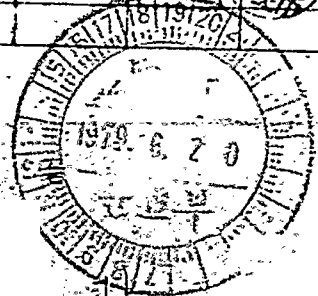
부훈령으로 공포하였음을 통지하니 시행에 차오 없도록

하시기 바람

1. 공포일자 : 1979. 6. 19

2. 공포호수 : 문교부훈령 제320호

계	계장	사무과장	한장	공 람 일
				



첨부 교육공무원증색채취정중개정령 1부

문 교 부 장 관

정부공문서취급 제27조 제2항의 취정에 의하여
문교부차관 장 인 수 견결

수신처 부 1-16 문 1-5 다 1-11 화 1-38 권 1-36

에너지는 주력이다. 아껴써서 애국하자

문교부훈령 제 320 호

교육공무원증색채취경증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79년 6월 19일

문 교 부 장 관

교육공무원증색채취경증개정령

교육공무원증색채취경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도)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색채 구분표

색 채	대 상 직 종
노 랑 색	1. 본부 장학실장 및 장학관
	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학무국장
	3. 중앙교육연구원의 부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4. 국사편찬위원회의 실장급 교육연구관
	5. 시·도교육위원회 부교육감인 장학관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 교육구청장인 장학관
	7. 재외국민교육원장인 장학관·교육연구관



색 채	대 상 직 종
유 색	1. 본부 교육연구원·교육연구사
	2. 시·도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교육연구원
	3. 중앙교육연구원 장학관·교육연구원·장학사·교육연구사
	4.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원·교육연구사
	5. 학예실원 사무국 교육연구원·교육연구사
	6. 부산시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구청장인 장학관
	7. 대학소속 교육연구원

의 채	대 상 색 채
원 색	1. <u>각급학교 교원</u> 2. 교육감·교육장 3. 시·도교육위원회 및 시·군교육장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 4. 대학소속 교육연구사

을 산업 대학	일 채
97. 6. 22.	
13 20	
152/	
사무과	
	197. 11. 20. 이시 처리할거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인사 201 - 1791

452

1979.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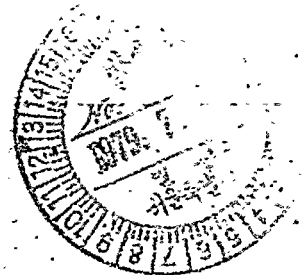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 (여규)

1. 서울특별시 사무직원 규칙 개정으로 공무원증 발급 사무가 과급 기관장이기 후가 위임됨에 따라,

2. 공무원증 발급 사무의 신속, 정확성을 기하고자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을 서달하니, 이후 사무 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첨부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 1부. 끝.



산업대학	현재	
1979. 7. 16		
29서서 50부	서울	특별
1727		시
		과

수신처 서과 1-76, 서무 1-13, 서울 1-2, 서경 1-7, 서사 1-69.

사무과장	하	장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증 규칙에 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발급권의 위임)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규칙에 의거 각급 기관장에 내부 위임된 공무원증 발급 사무의 대상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출장소장 및 2급 사업소장

3급을류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2. 3급 사업소장 : 4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제 3조 (발급 대장) 공무원증 발급 사무를 위임받은 각급 기관장 (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발급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4조 (공무원증 용지의 수불) 발급권자는 6개월마다 필요로 하는 공무원증 용지를 시장에게 청구 하여야 (별지 제3호 서식) 하며, 인사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불 대장에 의하여 이를 불출한다.

제 5조 (주민등록사건 날인) (1) 발급권자는 수령한 공무원증 용지에 시장의 직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 하며, 용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에 기재사항을 완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출입 및 시장 계인을 달인한후 포장하여야 한다.

제 6조 (발급의 근거) 공무원증 발급은 반드시 인사기록 카드에 의할 것이며, 공무원증 번호,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과 사진등을 명확히 대조 하여야 한다.

제 7조 (포장) 공무원증의 제작에 필요한 포티아크림포장은 구, 출장소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포장기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 8조 (제 발급) 공무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제 발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공무원증의 회수) (1) 발급권자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제 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분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 공무원증을 회수 하여
야 한다.

(2) 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인사담당자는 공무원증을 회수 하여 발급
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 규정) 서울특별시 영규 제 19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증
발급 요령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공무원증 발급 대장

결재란	공무원 증 번호	발급 년월일	소속	직위 및 직	생년 월일	성명	신 제 발급	규 격	회 수 여부	개인	사진	비 고
											3cm 3cm	

16 절지

별지 제 2호 서식

공무원증 수불 대장

결 재 과 장	계 장	년월일	수불 내역	공 무 원 증 번호	수불 매수	잔 여 매수	수 령 인

별지 제 4호 서식

공무원증 (신규, 개선) 교부 신청서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서유 :

- 첨부 1. 사진 2매 (3개월이내 촬영)
2. 구 공무원증

위와 같이 공무원증을 발급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인)

귀하

부여너지는 국책이다. 아껴써서 애

(장인생략)

문 고 부

총무 121-2051

(70-3315)

1979. 8. 1.

수신 수신처 참조 8215

제목 정부공문서 분류표 및 공문서 보존기간 종별책정 기준표 배부

1. '79. 7. 1 부칙 정부공문서 분류 번호의 지정에 관한 규정 및 공문서 보존기간 종별책정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부공문서 분류표 및 공문서 보존기간 종별책정 기준표" 책자를 별첨과 같이 제작하여 배부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책자 수령 즉시 수령증을 송부할 것이며, 구 시·도 교육청은 관할 시·군 교육청문을 일괄 송부하니 귀직 책안하여 재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배부표 1부
- 2) 책자 부. 끝.



9 8 6	결재	
09 8 50 분	지	
852	지	
10/21	지	
문	교	부
	장	

정부공문서규칙 제 2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장 박대면 편

수신처 : 마1-11, 큰 1-5, 마 1-38, 전 1-36, 부 1-46.

121

부여너지는 국책이다. 아껴써서 애

배 부 표
=====

기 관 명	수 량	배 부 기 준
부 내 심·국·과	46	46기관 × 1 권
직수 문화기관	15	5기관 × 3 권
시·도교육위원회	33	11기관 × 3 권
시·군 교육청	158	158기관 × 1 권
서울 4		
부산 2		
경기 21		
강원 16		
충북 11		
충남 16		
전북 15		
전남 25		
경북 25		
경남 20		
제주 3		
국·공립대학교	16	8 기관 × 2 권
국·공립대학	30	30기관 × 1 권
국·공립전문대학	36	36기관 × 1 권
계	334	